

윤 리 규 정

목 차

1. 윤 리 헌 장

2. 윤 리 강 령

제1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3조 고객에 대한 윤리

제4장 시장 질서의 준수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3. 실 천 지 침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윤리적 직무수행

윤 리 헌 장

현대스틸산업은

**함께 내일을 창조하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현대스틸산업인은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현대스틸산업인은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서로 협력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현대스틸산업인은 회사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킨다.**

**현대스틸산업인은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윤 리 강 령

제1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조 (건전한 기업문화의 조성)

- ① 회사의 경영이념 및 목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 ② 임직원 각자는 사회의 중추적인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공정한 직무수행이 올바른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윤리적인 시민의 표상이 되는데 최선을 다한다.
- ③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령, 국제적 선언 및 회사의 사규와 경영방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부조리와 허례허식을 철저히 배격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단호히 단절함으로써 깨끗하고 정직한 윤리적 기업문화를 조성한다.

제2조 (성실한 직무수행)

- 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3조 (주주 및 투자자 보호)

- ①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수익 높은 사업을 개발하고 실현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한다.

- ②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 재무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
- ③ 주주 의사결정을 위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 ④ 주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회사 경영에 참고한다.
- ⑤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 ⑥ 회사의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보호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4조 (고객 가치 창출)

- ①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극대화한다.
- ②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

제5조 (고객 보호)

- ① 고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입증된 사실을 기반으로 성실히 제공한다.
- ②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③ 고객 불만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④ 제품 및 서비스, 기타 사업 운영에 대한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4장 시장 질서의 준수

제6조 (법령 준수)

- ① 국내외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실정법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에 대한 내용을 준수한다.
- ② 모든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독점 원칙과 부패방지법을 준수한다.

제7조 (공정한 경쟁)

- ① 최고의 품질과 기술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정착시킨다.
- ② 경쟁사와의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할당 등 독점행위를 근절한다.
- ③ 공개되지 않은 경쟁자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8조 (공정한 거래)

-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여 공존공영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한다.
- ②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 선물 등 유무형의 이익을 받거나 공여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9조 (임직원 존중)

- ①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성, 학력, 지연, 인종, 종교, 국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하고 협력한다.
- ③ 임직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 ④ 임직원이 직무와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사의 발전과 임직원 가치 실현에 노력한다.
- ⑤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0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 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기업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 ③ 사업지역의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및 투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11조 (인권보호)

- 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관련법률(근로기준법, 노조법, 기간제법, 파견법)이 노동 국제표준을 상회하는 수준인 바 이를 지지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세계 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 선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지지한다.
- ②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명확한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이들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 사업활동을 전개한다.
- ③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 수렴 및 실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노력한다.
- ④ 이해관계자가 인권 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제12조 (환경보호)

- ① 환경·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한다.
- ② 사업 전 과정에 있어서 환경과 안전을 주요 사안으로 고려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③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 수자원 보호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도모한다.
- ④ 임직원, 파트너사, 발주처 및 고객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환경 및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본 윤리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 (윤리경영 실천서약)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겠다는 실천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윤리강령 해석)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윤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회관습 등 규범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윤리경영 주체)

- ① 윤리경영 담당 조직인 인사총무팀은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및 비윤리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제도 및 규정, 절차의 수립, 운영, 감독 등 윤리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제6조 (상담창구 및 제보 채널 운영)

인사총무팀은 회사의 임직원이 윤리경영과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실천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실천지침은 효율적인 윤리규정의 실천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현대스틸산업의 본사, 국내외 현장, 공장, 출자 법인 등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현대스틸산업과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 법인, 중개인, 합작회사를 포함한 파트너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 (공정 경쟁)

- 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며 공정한 거래와 경쟁에 대한 국내 외 법령을 준수한다.
- ② 모든 사업 활동에 있어 가격담합, 담합입찰, 시장 할당 등 독점행위를 근절하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떠한 문서나 의견을 경쟁자들과 주고받지 않는다.
- ③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부당한 대우, 불친절한 거래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반부패)

국내외 부패 방지 법령 및 부패 방지 관련 국제 협약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모든 거래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금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제5조 (상생협력)

- 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체제로 우수한 파트너를 발굴하고 선정한다.
- ②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뤘나가기 위해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협력사들이 현대스틸산업의 윤리경영 방침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③ 협력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활동 및 제품 생산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사의 환경 및 사회적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피드백하며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정치적 중립)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모든 부조리를 배격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치 후원 기부 등 정당 지지 및 참여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

제3장 윤리적 직무수행

제7조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익추구 금지)

① 용어 정의

-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회원권 등), 물품, 유가증권 등 경제적 이익
- 접대 : 식사, 음주, 공연, 사행성 오락, 불건전업소 등
- 편의 : 교통,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공급사,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
-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② 금품 및 향응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현금, 상품권, 회원권, 물품, 유가증권)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금품을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 단,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파트너사와 국내외 출장 시 공적 사적인 비용을 처리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 소속 팀장, 현장소장 또는 인사총무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인사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조금

- 적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한 경조금 및 경조 물품의 경우 반환하거나, 회사에 기탁한다.

④ 접대

-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비용처리요청, 향응 및 접대, 사행성 오락 등은 금지한다.

⑤ 편의

- 임직원은 파트너에게 교통수단, 숙박시설,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 파트너와 업무 목적상 공동 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비용분담, 찬조금품 및 협찬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금전거래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상호 간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약속이나 퇴직 후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회사 자산의 부당한 사용)

- ① 회사의 유형자산 (차량, 컴퓨터, 사무용 비품 등) 과 회사의 무형자산 (정보, 기술, 노하우 등)은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절차로 반출, 전용할 수 없다.
- ② 토지, 건물, 설비나 원부자재는 사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된 물품 이외에는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 ③ 설계도, 영업비밀, 사업정보 등과 같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중요자산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임직원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요자산의 훼손이나 유출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엄정한 책임을 부과한다.
- ⑤ 예산이 있다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⑥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 등 절차에 따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 (근무태도 및 직원 상호간 금지사항)

- 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역이 수반되는 겸업 및 부업 행위를 금지한다.
- ②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용 또는 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 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성차별, 성희롱, 직장 괴롭힘을 금지한다.
- ④ 임직원 상호 간 이용한 사적 지시, 욕설,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비방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임직원 상호 간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상사의 지시 내용이 부정, 비리와 관련 되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충 처리 게시판 또는 인사총무팀에 신고한다.
- ⑥ 모든 의사결정 관련 문서는 전결 규정을 따라야 하고 정해진 규정에 맞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제10조 (정보 보호)

- ① 업무상 인지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② 이해관계자의 정보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호하며 수집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제11조 (내부자 거래 금지)

- ① 회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회피하는 등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
- ② 대가를 받고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내부 정보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주식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

제12조 (이해상충 행위 금지)

- ① 가족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타인과는 회사의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다.
- ②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③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 이해관계자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여 타인의 채용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④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사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해당 팀장 또는 현장소장, 공장장, 실장은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내부고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사총무팀에 신고한다.

- ③ 인사총무팀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⑤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 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제14조 (해석)

- ①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본인은 현대스틸산업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을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지침을 다음과 같이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사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담합 등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배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 본인은 부정한 금품, 향응, 청탁 등을 행하거나 용하지 않겠으며,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본인은 사내 임직원 및 파트너사 등에 대한 부당한 행위나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회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회사의 비용 또는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고, 근무시간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대외업무 수행 시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중하면서도 공손한 태도로 임하여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임직원으로서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위반한 것을 방조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처벌을 감수할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06. 01